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53470 판결 [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5347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1 선고 2019가단522735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진석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제

변론 종결2024. 8. 29.

판결 선고2024. 10. 31.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1. 선고 2019가단5227353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919,000원 및 그 중 47,139,960원에 대하여는 2017.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2,450,040원에 대하여는 2021. 9.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50,329,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179,000원 및 그 중 16,133,660원에 대하여는 2017. 8. 1.부터 2019. 10.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43,045,340원에 대하여는 2021.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1행부터 제7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해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가 2017. 7. 21.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수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의 위 계약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12조 제1항의 해지사유 중 제3호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필라테스샵 운영을 1일 이상 중단하거나 관리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해당)."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을 회수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위탁계약을 유지할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필라테스업을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을 회수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부터 제9쪽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필라테스 기구에 대한 사용료 및 감가손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12조 제3항에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이 사건 센터의 모든 자산은 피고의 소유로 하며, 필라테스샵 관련된 환불 및 기타 문제에 관련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원고에게만 있으며,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피고의 해지로 인하여 해지된 이상,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가 구매한 필라테스 기구 등은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손해액 등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1심판결 제9쪽 아래에서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12조 제1항은 원고 일방에게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정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 내용도 필라테스 1일 중단이라는 사유만으로 고액의 보증금과 금액을 불문하고 미정산된 레슨비전액을 귀속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하고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민법 제103조, 104조 위반)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제1심판결 제10쪽 제8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종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8. 2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형작

판사김연화

판사해덕진